

지역사회협력·기여촉진에관한규정

4-2-23

규정번호 4-2-23
제정일자 2018.2.5
최근개정 2026.7.20
개정차수 9차 개정
관리부서 평생교육팀

[전면개정 2022.12.22.]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사랑·진리·봉사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경제·문화 발전에 봉사·기여 및 협력하기 위한 인적자원 및 기술(노하우), 물적 자원 등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협력을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(지자체 및 공공기관 지원)
2. 지역사회 협력 수요분석
3. 지역사회 협력 활동 및 성과 관리(봉사, 진로체험, 수탁기관 운영 등)
4. 지역사회 연계 (비)교과과정 모델 개발(리빙랩) 및 운영
5. 지역사회 혁신(발전) 기여 기획 및 컨설팅
6.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·창업 지원체계 구축
7. 지역사회 정책연구 및 공동 브랜드 개발
8. 늘봄학교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(신설 2026.7.20.)
9. 기타 지역사회 협력 관련 지원(개정 2026.7.20.)

제 3 조(지역범위)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지역 범위는 우리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을 우선으로 하며 그 밖의 지역은 지역사회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.

제4조(명지지역상생협력센터) ① 제2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지지역상생협력센터(Myongji Regional Co-prosperity & Cooperation Center)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총장이 위촉하며,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되,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로 보할 수 있다.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③ 센터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반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④ 센터는 관계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관련부서 및 연계학과의 참여 분야(역할)는 별표와 같다.

제 5 조 (지역사회협력위원회) ① 지역사회 상생 협력체계 구축 및 센터 운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4-2-23 지역사회협력·기여촉진에관한규정

의한다.

1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수요 및 요구 분석
2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계획 및 지원 실적(성과) 관리
3.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성과분석 및 환류(개선·보완)
4. 기타 지역사회 협력·기여에 필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평생교육본부장, 부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센터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리한다.(개정 2024.7.24.,2025.6.23)

③ 위원회는 기획실장,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산학협력처장, 사무처장, 교목실장, 평생교육본부장, 명지지역상생협력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총장이 지역사회 협력·기여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교직원 및 외부인사로 2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.(개정 2025.3.31.,2025.6.23)

④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4.7.24.)

⑤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담당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.

제 6 조 (사업관리) ① 관계부서 및 연계학과는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포함하여 추진실적 및 운영계획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센터장은 지역사회 수요 및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사회 협력·기여 활동 연차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센터장은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관리하며, 연차별 실적분석 보고서를 총장에게 보고하고, 관계부서의 장에게 공유 및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

④ 센터장 및 관계부서의 장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 7 조 (재정) 재정은 우리대학 교비, 지자체 및 재정지원사업, 기부금 또는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8 조 (운영세칙) ① 지역사회 협력에 관하여 학칙 및 관련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따로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4-2-23 지역사회협력·기여촉진에관한규정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4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[전면개정]

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5조제2항·제4항)

부 칙(직제규정) <2025.3.31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

<1> - <7> (생략)

<8> 지역사회협력기여촉진에관한규정(4-2-23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지역사회협력위원회) ③항의 “평생교육원장”을 “평생교육본부장”으로 한다.

[별표]의 “평생교육원”을 “평생교육본부”로 한다.

<9> - <17> (생략)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(제5조제2항·제3항)

부 칙[별표개정]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제2조제8호·제9호, [별표])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4-2-23 지역사회협력·기여촉진에관한규정

[별표] 부서별 지역사회 협력·기여 분야(개정 2018.08.27., 2018.12.10., 2022.04.08., 2022.06.08., 2022.12.12., 2026.7.20.)

관계부서(연계학과)	분야(역할 및 중점사업)
교목실	지역사회 봉사(재능기부) : 노인·장애인·청소년 복지 지원
기획실	수탁기관 운영
교무처	학과 전공 및 봉사 교과 연계 지역 문화 선도 활동(재능기부) : 노인·장애인·청소년 복지 지원
학생지원처, 사무처, 학술정보원	지역주민 시설 개방, 지역 문화 선도 활동 지원
평생교육본부 (M-RCC)	•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관리 • 지자체 사업 참여(교육 및 지역 당면과제 해결) • 비학위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: 성인학습자 및 지역주민 커리어 개발 지원(자격 및 진로탐색, 레스트과정 등) • 늘봄학교 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진로체험센터	교육기부(진로체험 등) 운영 및 관리
유아교육학과, 사회복지과, 청소년교육상담과 등	관련 부서별 사업 참여 및 기타 지역사회 봉사(별도 봉사단 운영)